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일 러 두 기 >>>

목적 본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 사목 6)에 따른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유형 및 관련 사례(예시)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성 본 안내서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설명, 플로팅광고의 삭제제한 행위의 세부유형 및 사례(예시), 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대상 본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상 플로팅광고를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앱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됨. 이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될 수 있음

활용 범위 플로팅광고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자율 점검 및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인터넷 불편광고 모니터링」시 기준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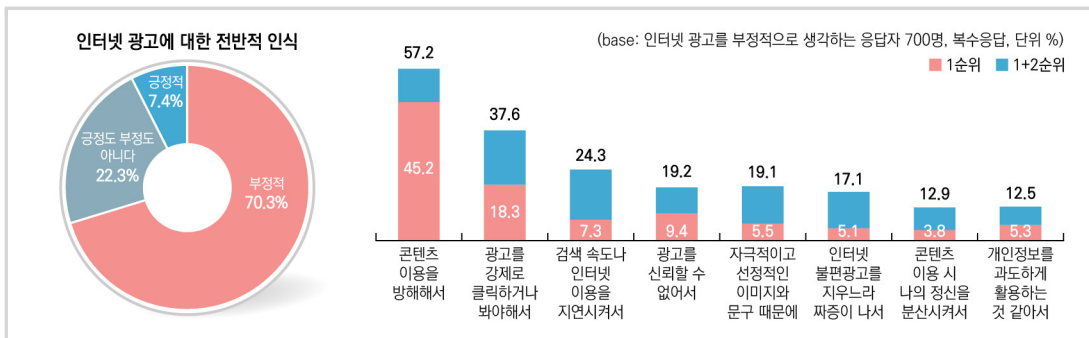
I	개요	1
II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	2
	1. 관련 법령 규정	2
	2. 적용 대상 및 범위	4
	3. 개념 정의	5
III	세부 유형 및 사례	6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7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9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11
IV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절차 및 사항	15
	1. 개요	15
	2. 세부 절차	16
V	플로팅광고 이용자 신고 센터	19
VI	부록	20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21
	2.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23
	3. 문의사항 안내처	28



I

개요

-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술 발전 등으로 플로팅광고와 같이 이용자의 주목을 끄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 기사, 게시물 등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는 삭제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 전반에 걸쳐 불편을 야기합니다.



온라인 불편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평소 인터넷 광고에 대해 긍정적(7.4%)이보다 부정적(70.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이유는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17년 소비자리포트)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17.1월부터 시행),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광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광고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내서에서는 '17년 5월 마련한 11개 세부 유형을 보다 체계화하여 새로운 유형의 위반형태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를 기반으로 사업자 스스로도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II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

1 관련 법령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PC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앱) 상에서 삭제가 제한되는 플로팅광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사목 6)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본건 조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플로팅광고 관련 규정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플로팅광고 관련 사업자(부가통신사업)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3호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 본건 조항의 수범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본 조항에서 특정하고 있는 행위의 경우,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웹사이트 등의 운영사업자가 본 조항의 주요 수범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23호)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되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 (신고가 면제된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신고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서 p.21 참고
- 본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웹사이트·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이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당하게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 웹사이트(Web site)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웹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 모바일 웹(Web)이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일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모바일 앱(App)이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웹사이트·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정보 등을 가리는 광고 제공 시, 해당 광고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개념 정의

- ① ‘**광고**’란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제시 및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의 광고는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② ‘**플로팅(floating)광고**’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웹사이트 등에서 화면의 상·하단 혹은 양측면 등에 위치하면서 다른 정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 ③ ‘**다른 정보**’란 웹사이트 등에 게시·게재되는 기사(사진 포함), 게시물(글, 그림·사진, 동영상 등 형태 무관), 게시물 목록 등의 정보를 총칭합니다.
- ④ ‘**삭제**’란 화면에 표시된 광고 등을 지워 화면 내에서 종국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⑤ ‘**부당하게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표시의 위치·크기·색상 및 광고 삭제 방법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삭제 표시를 클릭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타 광고에 비해 삭제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제한적이라면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하거나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I

세부 유형 및 사례

- ◆ 아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들의 구체적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 향후 기술 변화에 따른 광고 형태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위반 형태는 아래 제시된 유형(사례)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상호 배타적인 기준에 따라 유형이 분류된 것은 아니므로 **1개의 광고가 여러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세부 유형 총괄표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 가.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 가.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 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 가.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 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 다.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 라. 삭제 표시와 삭제 표시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 마.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 바.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예시 및 설명	
PC 웹사이트	모바일 웹·앱
 The PC website screenshot shows a clothing advertisement. A red box highlights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ad, where a delete button is missing, making it impossible for users to remove the ad.	 The mobile app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A red box highlights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ad, where a delete button is missing, making it impossible for users to remove the ad.
 The PC website screenshot shows a movie advertisement. A red box highlights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ad, where a delete button is missing, making it impossible for users to remove the ad.	 The mobile app screenshot shows a movie advertisement. A red box highlights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ad, where a delete button is missing, making it impossible for users to remove the ad.

❌ 플로팅광고에 [X], Close 등의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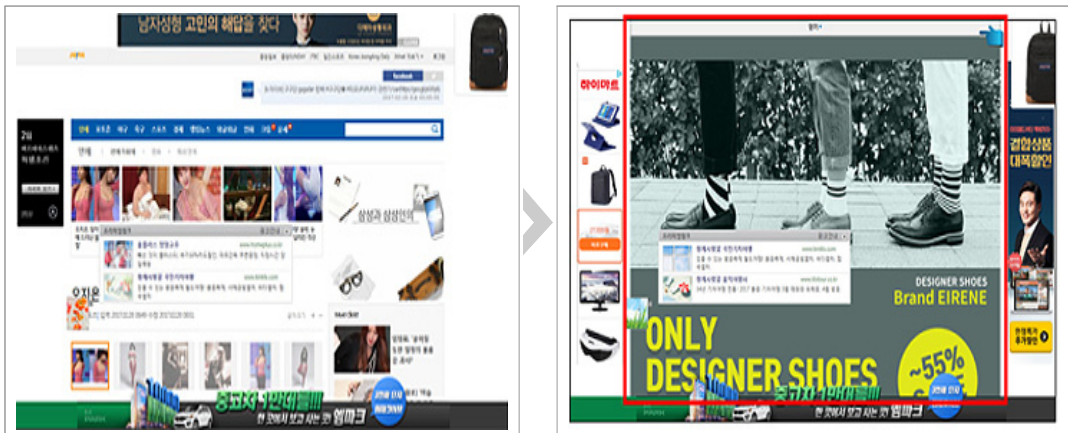
예시 및 설명



스크롤 이동 시

- ❌ 화면 내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속 광고가 자동 확장되며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할 수 없음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예시 및 설명



스크롤 이동 시

- ❌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에 있는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로 강제이동하고 삭제할 수 없음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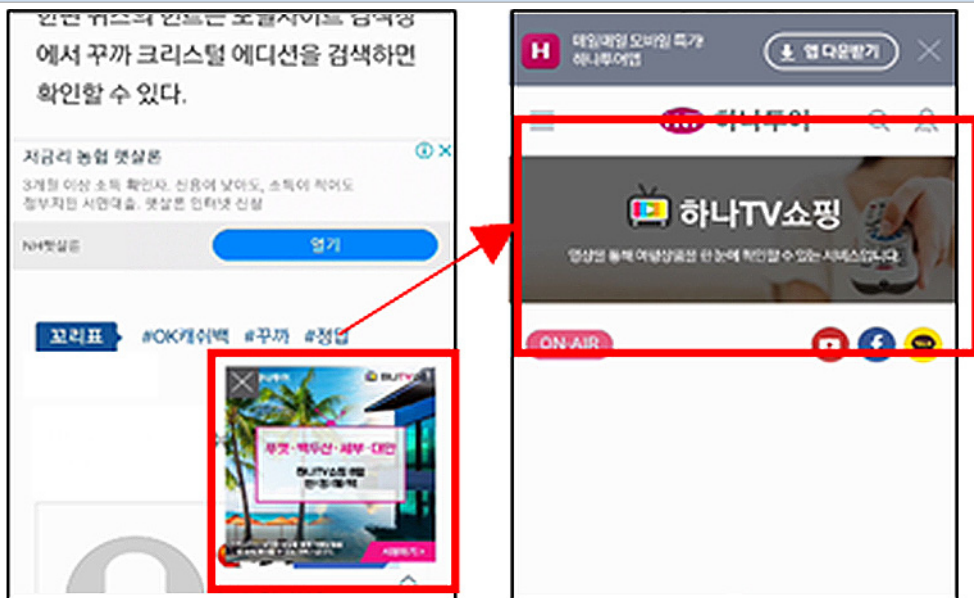
가.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예시 및 설명	
PC 웹사이트	모바일 웹·앱
  	   

❌ 삭제 표시 클릭 시 광고가 사라졌다가 동일 정보게시물 내 새로고침 등 재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새로운 광고가 재생성되거나, 스크롤 이동 시 재생성 되어 나타나는 경우

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예시 및 설명



❌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 클릭 시, 팝업 창 형태로 새로운 광고가 생성·노출됨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예시 및 설명	
PC 웹사이트	모바일 웹·앱
	
❌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거나, 삭제 표시 일부가 화면 내 다른 아이콘 등으로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음	

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예시 및 설명	
	
❌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색과 화면 바탕색이 동일하여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음	

다.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예시 및 설명



- ❌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가 광고 외부에 위치하여 해당 삭제 표시가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삭제 표시의 식별이 어려움

라. 삭제 표시와 삭제 표시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예시 및 설명

좌·우측 상단에 ✕버튼 함께 2개 표시	우측의 ✕버튼 클릭 시
입력 : 2020.11.14 9:21 AM 수정 : 2020.11.14 9:42 AM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감성 브로맨스를 예고했다. 영화 '서복'(감독 이용주) 측이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유(민기 역)의 특별한 동행이 담겼다. 박보검의 마지막 목소리로 시작한다. 홀로 남은 "영" 27,900원	우측의 ✕버튼 클릭 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가까워졌다. 하지만 조우진(안부장 역)은 복제 인간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 공유와 박보검을 발견 후 내렸다.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졌다. 박... 내 운명에 대해서"라고 말하며 걸어나갔다. 본편에 대한 궁금... criteo, 광고 광고 신고하기 Ad choices ▶

- ❌ 2개의 [✕]표시를 노출한 후 그 중 1개의 [✕]표시는 클릭하여도 광고가 삭제되지 않음



- ❌ [✕]와 Close 표시가 플로팅광고에 함께 표시되어 어느 표시를 클릭하여야 광고가 삭제되는지 알 수 없음

마.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예시 및 설명

이와 3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4시 30분 예정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기술적 (회기(會期)) 결정 안건 대상 불리바스타로 지연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의원들은 한국당 배준미(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3시간 30분 3차 본회의 개최 스케줄(부수입), 민생법안 우선 처리, 소관법 개정안 등 핵심토의 대상 법안부터 불리바스타 실시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실제법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종 직후인 정오경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다. (언론) 저러 소서는 예산부수입안을 먼저 처리하고, 민생 법안을 차기로 했다"면서 "그 다음에 공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당원)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불리바스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약 3시간 후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선거법"이 아니라 의사결정 1시간 뒤가 결정의 간에 대해서부터 불리바스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최종 후 기자들과 만나 "불리바스타를 하리 들어가겠다"며 "오늘에 한나를 할 수 회가 결정의 간은 불리바스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날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제기 한 시적으로 '언' 한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 하차와 선거법에 논란이 되고 불리바스타가 들어갈 때 태나지, 그 앞의 것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겠다. 선거법에 대해 불리바스타를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불리바스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정된 관리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관행상 토론 대상이 아닌 인사 관련 안건과는 달리, 회기 결정 안건은 원 전체가 있음을 내세우며 불리바스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날 경우, 불리바스타의 기간을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한 국회법 규정이 아니기에 문

➔

심 원내대표는 최종 후 기자들과 만나 "불리바스타를 하리 들어가겠다"며 "오늘에 한나를 할 수 회가 결정의 간은 불리바스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날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제기 한 시적으로 '언' 한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 하차와 선거법에 논란이 되고 불리바스타가 들어갈 때 태나지, 그 앞의 것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겠다. 선거법에 대해 불리바스타를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불리바스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정된 관리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관행상 토론 대상이 아닌 인사 관련 안건과는 달리, 회기 결정 안건은 원 전체가 있음을 내세우며 불리바스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날 경우, 불리바스타의 기간을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한 국회법 규정이 아니기에 문

삭제 시도 시

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지(표지)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삭제 시도 시

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디지털카메라 파나소닉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지(표지)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서울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년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표지(표지) 운세코리아 할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

삭제 시도 시

수원 고려직접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등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년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표지(표지) TOP쪽집게 타로, 사주 공합, 신점 애정, 재회마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 unsek.com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 시 광고 화면이 확장되고, 확장 화면 내에서 광고 삭제가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유형 3-마>의 하단 2개의 사례에 해당하는 광고를 운영한 2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20.11.24)

III

세부 유형 및 사례

바.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예시 및 설명

삭제표시 없는 광고	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
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장제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식으로 북한이 전혀 도발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있으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표는 기자회견 일정 이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교차 상의한 북미대화 돌파와 함께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장제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식으로 북한이 전혀 도발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있으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표는 기자회견 일정 이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교차 상의한 북미대화 돌파와 함께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광고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이후에야 삭제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유형 3-바>에 해당하는 광고를 운영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20.11.24)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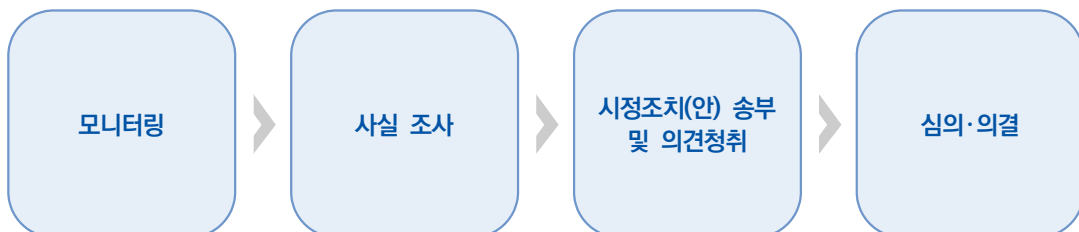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절차 및 사항

-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사-6)에 따른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92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합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 및 제재 절차 〉



2 세부 절차

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웹사이트 방문자 수(랭키닷컴 등 기준) 등을 기준으로 매년 모니터링 대상 웹사이트(100여개)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2)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PC 및 모바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하여 연 3~4회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모니터링 시,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웹사이트 접속 시부터 모니터링 완료 시까지의 과정을 모두 동영상 형태로 저장 및 보관합니다.

나. 사실 조사

- 모니터링을 통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사실 조사 시에는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등에 조사관이 출입하여 관련 서류, 그 밖의 위반행위 관련 확인을 위한 자료나 물건을 열람(제출 요청) 또는 확인합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 조사(제2항)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제5항)

다. 시정조치(안) 송부 및 의견 수렴

-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사항,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내용으로 시정조치(안)이 도출됩니다.
-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하며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제3항)

라. 심의·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결정)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의결 시,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제8조)

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절차의 개선,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금지행위의 중지(제1항 제6호)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1항 제7호)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제1항 제9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제1항 제11호)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제1항 제11호)

(2) 과징금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플로팅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고,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제1항)

※ 벌금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는 구분되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제50조제1항 금지행위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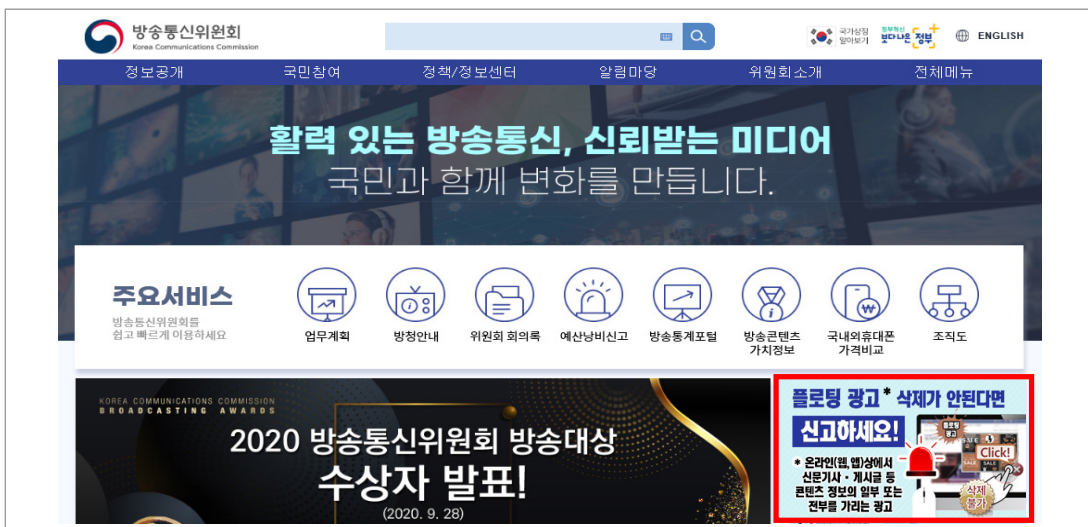
참고 : 행정지도

- 부가통신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법정제재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진 개선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됩니다.
- ※ 행정지도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부가통신시장 및 광고시장의 특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행정지도 없이 바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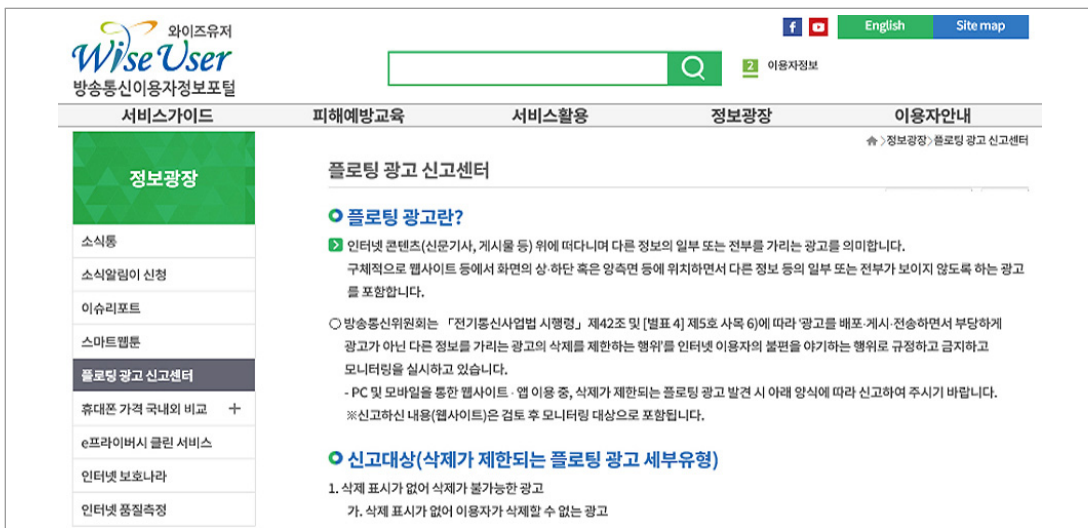
V

플로팅광고 이용자 신고 센터

- 이용자 누구나 삭제가 제한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 또는 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iseuser.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 접속 후 우측 배너 클릭



-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 → [정보광장] →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 클릭



VI

부록

-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 21
- 2.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 23
- 3. 문의사항 안내처 ————— 28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가. 신고대상 및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23호)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합니다.

- 신고 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 역무제공 중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1억원 이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제96조)이 됩니다.

나. 신고면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 다만 신고가 면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라. 신고 방법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전자민원센터>전자민원신청>민원신청>통신사업 선택>부가통신사업 신고 신청
- 우편/팩스 : 지역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또는 이용자보호과

마. 신고 현황 확인

- 중앙전파관리소(www.crms.go.kr)>정보>부가·기간사업자 등록현황>부가사업자
※ 문의 : 지역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또는 이용자보호과에 확인(문의처 p.28 참고)

2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통신업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업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행위 :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다. 부가통신 신고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문의사항 안내처

○ 플로팅광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7 또는 1544, 1546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권익보호팀 ☎ 02-580-0753 또는 02-580-0751

○ 부가통신서비스 신고 관련

기관명	관할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인천,경기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02-2680-1757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경남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051-974-5119
광주전파관리소	전남,광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강릉전파관리소	강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744-3963
대전전파관리소	충청, 대전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86번길 64	042-520-4135
대구전파관리소	경북, 대구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25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16
울산전파관리소	울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청주전파관리소	충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32
제주전파관리소	제주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5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